



「우리 청년도약계좌」 특약

(2024.04.08.)



제1조 약관의 적용

- 이 특약은 「우리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이 적금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을 포함합니다)
 -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총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3.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50% 이하일 것

나. 가구원^{주3)}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총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합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②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③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적금은 이 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청년희망적금"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합니다.

제3조 신청 및 가입

이 적금은 신청 후 제2조의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고객에 한하여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 가능합니다.

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 ①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자유적립식)입니다.
- ② 이 적금의 저축기간은 가입일부터 5년입니다.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 ① 이 적금은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의 범위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주5)}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5) (연간기준 예시) '23.7.10. 가입 시

1년차('23.7.10~'24.7.9), 2년차('24.7.10~'25.7.9), 3년차('25.7.10~'26.7.9), 4년차('26.7.10~'27.7.9),
5년차('27.7.10~'28.7.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적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주6)}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개년^{주7)} 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6)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

※ 주7) (예시) '24.2.22일 가입 시 2개년('24.2.22~'26.2.21)

- ③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 (일시납입 기간)동안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이 적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 ⑥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이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등

- ① (기본금리) 이 적금의 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부터 기본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해지) 이 적금은 본조 제1항의 기본금리와 제7조의 우대금리, 제8조의 특별우대금리를 합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중도해지)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 ④ (만기 후 해지)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2항의 만기해지 이자와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특별중도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우리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 ① 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등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제공합니다.

항 목	우대조건
예적금 미보유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급여이체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급여이체 ^{주8)} 실적을 보유한 경우
카드결제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 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우리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결제실적(월 1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주8) 급여이체 실적은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인정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8조 특별 우대금리(소득+ 우대금리)

적금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주9)}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가입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5회 : 우대금리×100%, 4회 : 우대금리×80%, 3회 : 우대금리×60%,
2회 : 우대금리×40%, 1회 : 우대금리×20%

※ 주9)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9조 세율의 적용

- ① 제5조에 따라 납입된 저축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1.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하 "과세특례 요건"이라 합니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2.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10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합니다)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3.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 ③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 ①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이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 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① 정부기여금은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이 제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② 정부기여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 다만,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주10)}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 주10)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 적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제5조에 따른 저축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합니다.
- ⑤ 정부기여금 지급 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주11)}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 이 속한 달까지 적용^{주11)}됩니다.
- ※ 주11)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② 본조 제1항의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제11조 제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산출합니다. 다만, 이 적금에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재가입 등

- ① 이 적금은 중도해지(제10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 ② 중도해지(제10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시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12)}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12) "(계약기간 - 재가입 전 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제14조 기 타

-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②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제2조제1항제1호의 나이요건,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기준, 제12조의 개인소득금액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④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적금은 만기 앞당김이 불가합니다.

부 칙 (변경사항)

변경일	내 용	관련조항	기 가입고객 적용여부
2023.6.15	약관 제정	-	-
2023.7.10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2조 1항 12조 2항	-
	외국인 실명확인증표	2조 6항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명확화	5조 1항 11조 2항 12조 1항	
	주석명 변경	13조 2항	
2024.1.25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소득인정	2조 1항 11조 2항	적용
	청년희망적금 지침 문구 명확화	2조 5항	
	청년희망적금 일시납 내용 반영	5조 2항 5조 3항 5조 4항 5호 5항 12조 3항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명확화	11조 3항	
	입금거래 관련문구 변경	5조 6항	
	정부기여금 지침 조항 변경	12조 2항	
	과세특례요건 미충족 관련내용 삭제	10조 1항 11조 1항	
	주석 변경	2조 1항 5조 2항 7조 2항 8조 11조 2항 12조 1항 13조 2항	
	병 급여 소득 인정	2조 1항 11조 2항	24.3.25 신청고객부터 소급적용
2024.4.8	가구 소득 기준 변경	2조 1항	24.2.22 신청고객부터 소급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10조 1항 10조 2항	적용
	가입 3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기본금리 지급	6조 3항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